

# 건 축 공 사 특 기 시 방 서

---

공 사 명 : 속초수련원 시설개선공사

2009. 01. .

(주)시명종합건축사사무소

## 1. 1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속초수련원 시설개선공사
- 2) 대지위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21-5
- 3)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 4) 대지면적 : 10,000.00 m<sup>2</sup>
- 5) 건물개요
  - 가. 건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연수원)
  - 나. 규모 (층수) : 지하2층, 지상8층
  - 다. 연 면 적 : 7,243.95 m<sup>2</sup>
  - 다. 건축 면적 : 987.23 m<sup>2</sup> / 건 폐 율 : 9.87 %
  - 라. 지상층면적 : 5,168.80 m<sup>2</sup> / 용 적 율 : 51.69 %
  - 마. 최고 높이 : 28.46 m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구조
- 6) 층 별 개 요

구 분		면 적	용 도	비 고
		m <sup>2</sup>		
지 상	지하2층	830.64	기계실, 전기실, 세탁실	
	지하1층	1,244.51	목욕실, 세미나실, 휴게실, PC방, 강당, 노래방, 사무실	
	지상1층	850.36	로비, 안내실, 사무실, 식당	
		13.60	정자	
	2 층	614.99	침실(14실), 린넨실	
	3 층	614.99	침실(14실), 린넨실	
	4 층	614.99	침실(14실), 린넨실	
	5 층	614.99	침실(14실), 린넨실	
	6 층	614.99	침실( 9실), 린넨실	
	7 층	614.99	침실( 9실), 린넨실	
	8 층	614.90	침실( 6실), 린넨실, 카페테리아, 세미나실	*증축: +121.68
합 계		7,243.95	침실(80실)	*증축: +121.68

### 1. 3 정의 및 기준

#### 1) 적용범위

- 가. 본 특기시방서는 “속초수련원 시설개선공사”의 일부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 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이상의 제품으로 시공가능하다.

#### 2) 관련법규 및 기준

- 가. 관련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기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기준, 목구조 계산 기준에 의한다.
-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 라.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구분)제출하여야 한다.

- \* 관련법 :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계획을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 3) 용어의 정의

#####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건축부”를 말한다.

#####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 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독자를 말한다.

③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 ④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 ① 본 시방서 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 마. 현장 대리인
-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 바. 하도급자
-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 하청 줄 수 없다.
  -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 1. 4 본 설계도서의 해석순위

- ① 시방서
- ② 설계도면
- ③ 내역서

#### 1. 5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 1) 이 의

-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 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 1. 6 회의 및 문서화

- 1)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3)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7 설계 및 공사의 변경

- 1)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나.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 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다.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라.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 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 3)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하여야 한다.
- 4)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1. 8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 1. 9 철거 공사시 유의 사항

PM.11시 ~ PM.12시, PM.3 ~ PM.5시, PM.9시 ~ AM.2시 까지 철거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 1. 10 공정 계획

###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라. 해당공사의 실시예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2) 제출물 계획서

-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 견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년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 라. 공사사진

##### ① 공사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 × 100mm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 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 때 시공자는 흑판(450 × 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 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원도1부, 청사진3부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1. 11 제출물

### 1)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 2) 시공 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장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 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1. 12 재료

###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 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 때까지 감독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시공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 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중 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 5)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 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 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 압축강도 측정기
- 수조(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 슬럼프 시험세트(몰드가 최소 60개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 공시체 제작용 몰드(최소12개이상)
- 염분측정기
- 공기량측정기
- 중량계, 비중계
- 목재함수율측정기
- 온도계(5개 이상)
- 고무망치, 쇠파치
- 마이크로미터

-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측량기구
  - 공사 촬영용 카메라
  - 표준채
  - 체가름시험기
  - 케스트햄머
  - 토질시험기
  - 공구세트
  - 제도용품1세트(감독자지정)
  - STEEL TAPE(50m, 5m) 각1개
  - 서류함(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 책상 및 의자(감독자지정)
  - 볼트미터
  - 암페어미터
  - 건조기
  - 소화기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 무전기
  -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1. 13 품질 및 공사장 관리

### 1) 품질관리

-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다. 품질관리 또는 검서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팩트사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1. 14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시공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터파기 완료 후

2) 파일박기 완료 후

3) 기초 배근 완료 후

4) 각종 스라브 배근 완료 후

5) 옥상 방수 완료 후

6)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

7)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 1. 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 1. 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 2) 준공검사원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발주자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 17 하자보수

1) 공사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